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
	보도	2019. 2. 13.(수) 조간	배포
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	윤영준 팀장(3145-8231), 박태익 선임(3145-8232)
	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	김인호 부장(2262-6603), 권성오 팀장(2262-6632)
	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본부	홍군화 부장(3702-8531), 엄준식 팀장(3702-8561)

제 목 :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.

I 추진배경

- 금감원은 '18.4월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'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'을 발표
 - 그 일환으로,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하고
 -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

[참고] 이미 시행 중인 "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 방안('18.4월)" 주요내용

- 장애 여부 사전 고지 폐지('18.10.1.부터 시행중)
 - 보험 가입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'장애 여부'에 관한 계약 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를 폐지
-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('19.1.1.부터 전환 신청 접수 중)
 - 장애인보험의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해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(제도성 특약)을 마련하여 시행중

1. 보험 가입시 장애인 차별 금지

□ 보험 청약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,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음

- '18.10.1.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하여 전면 시행중이며,
-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음을 안내

☞ 「18.10.1.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.」('18.9.13. 보도자료) 참고

2.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 및 판매회사

□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고품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*,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을 안내

*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또는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른 상이 등록자 등

- 암·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고품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(예: 20~30% 내외)한 장점이 있고,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중 연금액을 더 지급

< 장애인 전용보험 주요내용 >

보장성보험	연금보험	자동차보험	단체보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암, 사망을 주로 보장 •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 • 판매처 : 한화생명, 교보생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 보험 • 일반상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 • 판매처 : 농협생명, KDB생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보험 (대인, 대물, 자손 등) • 추가가능한 보장 : 건강회복지원금 등 • 판매처 : DB손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해사망을 주로 보장 • 추가가능한 보장 : 질병사망, 암진단 등 • 판매처 : 삼성생명, 교보생명

3.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

□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 및 구체적인 사례 등 소개

○ **(전환대상)** 피보험자(또는 수익자)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

※ 피보험자(또는 수익자)가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(또는 수익자)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

<참고> 세법상 장애인[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]

- ①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 등록자) ③ 「국가유공자법」에 의한 상이 등록자 등
- ② 「장애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

○ **(전환방법)** 가입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전환 신청

○ **(증빙자료)**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(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)

□ 각 보험회사가 '19.1월부터 전환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,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'20년초 실시하는 「2019년도분 연말정산」부터 적용

☞ 「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」(‘18.11.26. 보도자료) 참고

4. 장애인을 위한 전용상담 창구(온라인) 마련

□ 시·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(단축번호)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·팩스·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하고

○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, 이메일, 채팅상담창구 등을 목록으로 제공

Ⅲ 향후 일정

□ 「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」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(237개소) 등에 배포하고,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예정('19년 1분기)

[별첨] “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” 참고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사례 1 **보장성보험이 1건인 경우**

□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인 일반 보장성보험 1건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

구분	연간 보험료	세액공제 보험료한도	세액공제비율 (지방소득세 포함)	세액공제금액
전환前 (일반보장성)	100만원	100만원(일반보장성)	13.2%	13만 2천원
↓	↓	↓	↓	↓
전환後 (장애인전용)	100만원	100만원(장애인전용)	16.5%	16만 5천원

사례 2 **보장성보험이 2건인 경우**

□ 연간 보험료가 각각 100만원인 일반 보장성보험 2건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

→ 1건만 전환(②)하는 것이 2건 모두 전환(①)하는 것보다 유리

구분	연간 보험료	세액공제 보험료한도	세액공제비율 (지방소득세 포함)	세액공제금액	
전환前 (일반보장성)	200만원	100만원(일반보장성)	13.2%	13만 2천원	
↓	↓	↓	↓	↓	
① 2건 모두 전환	일반	-	-	-	
	전용	200만원	100만원(장애인전용)	16.5%	16만 5천원
	합계	200만원	100만원	-	16만 5천원
② 1건만 전환	일반	100만원	100만원(일반보장성)	13.2%	13만 2천원
	전용	100만원	100만원(장애인전용)	16.5%	16만 5천원
	합계	200만원	200만원	-	29만 7천원